

- 우편번호 : 57785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 누 리 집 : <http://www.gwangyang.go.kr>
- 수요기관 : 광양시(상수도과, 061-797-3589)



공 사 입 찰 공 고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입찰대행))

광양시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광양시 회계과(☎061-797-3275), 광양시 감사실(061-797-3217) 및 홈페이지(www.redwhistle.org/report)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gwangyang.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입찰대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광양시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시가 정한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위 치: 광양시 광양읍(우산리) 옥룡면(산남리, 운평리, 용곡리) 일원

라. 사업내용: 관로(D80mm~D200mm) L=5,336m, 공기밸브실 3개소, 유량계실 1개소

마. 추정금액: 금3,737,520,000원

- 추정가격 2,338,536,363원, 부가세 233,853,637원

도급자 관급자재 1,165,130,000원 ※관급자 관급자재 67,230,000원

바. 기초금액(부가세포함): (총괄)금2,572,390,000원 (1차)금1,298,630,000원

※ 연차사업으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1차분 공사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금2,108,893,864원

사. 공사기간: (총괄)착공일로부터 24개월 (1차)착공일로부터 13개월

아.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토목공사업 100%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공정, 품질,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광양시 상수도과 발주사업으로 회계과 입찰대행 건입니다.

- 입찰 및 적격심사: 광양시 회계과, 061-797-3275

- 계약 체결: 광양시 상수도과, 061-797-3582

2.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본 공사는 장기, 제한경쟁(중전 전라남도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 적격 심사대상공사입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8. 09:00	2026. 9. 10. 10:00	2026. 9. 10. 11:00	입찰집행관PC

4.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중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광양시 상수도과, 061-797-3589)으로 같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광양시가 낙찰예정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마.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결정하여 본 공사 적격심사에 따른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점수 미달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354,118,107원

(단위: 원)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4,118,107	26,642,630	35,202,363	3,500,841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045,354	37,172,130	219,793,019	14,761,770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대금 청구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같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본 공사는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제5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및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지역업체 참여권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광양시 생산제품 및 장비, 지역근로자 등을 우선 사용·채용토록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도 가능합니다.

※ **직접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를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②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7.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결과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 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 사. 광양시에서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 청구시스템(e호조+빌)’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자. 적격심사 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 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 기타 사업내용, 설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상수도과(☎061-797-3589),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광 양 시 재 무 관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2.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지연배상금은 지연배상금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상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고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기성 대금이나 준공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상계한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우리시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및 노무비 직접지급 등

4-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우리시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우리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92조 제 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와 이자(광양 시금고 정기예금 이율적용)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요령의 노무비 지급 확인사업 대상 사업(공사기간 30일 미만 등)인 경우 준공금지급전에 노무비 미 지급시에는 준공금 수령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합니다.
- 4-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4-5.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우리 시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자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 5-1.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발주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5-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를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기관(건설업 등록기관)에 **통보**합니다.

6. 하도급 관련 이행사항

- 6-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도 가능합니다.
- 6-2.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우리시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대금청구권이 압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한다.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약약서

당 사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광양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광양시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